

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86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일자 : 2008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2. 제정이유

-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,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함.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·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함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나.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(안 제3조)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정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해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생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
- 기타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다. 저소득주민 생활지원내용 및 재원(안 제4조)

-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
 - 명절(설, 추석)위문금품 지원
 - 보훈의 달,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
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· 고등학교 신입생자녀 교복비 지원
 - 기타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
- 재원 및 지원수준결정
 - 달성군 예산
 -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의하여 달성군에 배분된 금품

라.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(안 제5조)

-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보훈대상자, 장애인,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단체 및 시설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4. 참고사항

- 제정조례안 : 붙임
- 관 계 법 령 :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사회복지사업법, 한부모가족지원법, 국가보훈기본법, 장애인복지법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
- 입 법 예 고 : 2008. 2. 19 ~ 2008. 3. 10(특이사항 없음)
- 규 제 심 사 : 해당 없음
- 예 산 수 반 사 항 : 있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원대상자”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위문금품”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, 상품권, 물품 등을 말한다.

제3조 (지원대상자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정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해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생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
7. 기타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4조 (지원내용 및 재원)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절(설, 추석) 위문금품 지원
2. 보훈의 달,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
3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·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
4. 기타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대하여

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 1의 범위 안에서 지원수준을 군수가 정한다.

1. 달성군 예산

2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의하여 달성군에 배분된 금품

제5조 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 지원대상자는 제4조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.

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련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.

③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.

④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